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4. 6. 24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 출 일 자 : 1994년 6월 17일

○ 회 부 일 자 : 1994년 6월 17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 1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(1994. 6. 24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청 관리국장 신 재 철)

가. 제 안 이 유

○ 대통령령 제14,262호('94. 5. 16)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과의 복무형평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○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18조 제2항)

○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.(안 제21조)

○ 특별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,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백숙부모 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특별휴가 사유에 각각 추가함.
(안 별표 2)

3. 검토 의견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○ 대통령령 제14,262호('94. 5. 16)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

-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연가일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토록 하고,
- 공가 허가사유에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 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때 직접 필요한 기간을 추가토록 하였으며,
-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토록 한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은 물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공무원들의 건문과 지식을 높일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임.
- 특별휴가에 있어서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,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백숙부모 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특별휴가 사유에 추가한 것은 공무원 본인측과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맞추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연한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 음 "

5. 토 론 요 지 : " 없 음 "

6. 심 사 결 과 : " 원 안 가 결 "

7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

가.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 · 구조문 대비표